

## **안전교육의 과정·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**

(제78조제2항관련)

### 1. 교육과정·교육대상자·교육시간·교육시기 및 교육기관

| 교육과정 | 교육대상자            | 교육시간   | 교육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기관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강습교육 |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| 24시간   | 신규종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회  |
|      |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| 16시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회  |
| 실무교육 | 안전관리자            | 8시간 이내 |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회  |
|      | 위험물운송자           | 8시간 이내 |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회  |
|      |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    | 8시간 이내 | 가.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<br>나.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| 기술원  |

#### 비고

1.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2.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3.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(4시간 이내)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### 2. 교육계획의 공고 등

- 가.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, 장소,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
- 나.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

### 3. 교육신청

- 가.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
- 나.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

### 4. 교육일시 통보

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# 5. 기 타

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·시간, 강사의 자격, 교육의 신청, 교육수료증의 교부·재교부,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,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·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| 교 육 과 정        | 교 육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관리자<br>강습교육  | ·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<br>성질,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<br>법  | ·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<br>·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<br>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|
| 위험물운송자<br>강습교육 | ·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<br>설비작동법<br>·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| ·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<br>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|